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납북피해자단체 사업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 규정〉
■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27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홍기원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피해자 단체가 남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남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남북피해자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단체) ① 남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남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생략)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u>남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u> 3. (생략) ⑤·⑥ (생략)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u>의료비·생계비 지원 등 남북피해자</u>-----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남북피해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이하 “전후남북자단체”라 함)를 두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전후남북자단체인 (사)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회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통일부 지침¹⁾ 및 단체 정관²⁾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단체의 사업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가 보조금이 단체의 공익적 공동사업이 아니라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생계비와 같은 개별급여 형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³⁾

개정안은 고령화, 경제적 취약 등 남북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

1)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통일부훈령)에 따른 「(사)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은 매년 초 보조금 교부시 통보함.

2) (사)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정관」

제9장 의료비 지원

제39조(적용범위)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적용한다.

제40조(의료지원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의료지원비는 당해 국가보조금 예산액 책정에 따라 처리하되, 1인 1회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개인의 형편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50만원이상 초과할 수 없다.)

1. (1인1회만 지급)

암·치매 판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시 - 50만원

2. (만75세 이상 - 년 1회 지급)

병원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3. (만75세 이하 - 2년 1회 지급)

10일 이상 입원시 - 3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10일 미만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도 결산에서, 보조단체의 정관을 근거로 회원에게 보조금에서 의료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한 것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pp. 109-110. 참고.

보장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행법 제11조4)에 따른 의료지원금과 의료 관련 지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게 될 경우 제도 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납북피해자 단체는 기본적으로 친목단체로서 그 성격 안에서 상부상조하는 목적인데도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라는 업무를 법에서 부여하는 것은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가적 사무를 민간단체에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 과거사 법률에서 단체 보조금을 통해 회원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복지성 지원을 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6·25전쟁 시기의 납북자 및 그 유족을 대표하는 6.25납북피해인사가족협의회(회원 약 650명)도 강제납북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생계 곤란 등 유사한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전후납북자 단체에 대한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명시할 경우에는 유사 단체의 추가 요구로 인한 재정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2조제3호는 “납북피해자”를 당사자 외에 납북 후 귀환하지 못한 사람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의 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후납북자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매년 1억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료지원금)

①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8,500만원,⁵⁾ 2025년 12월 기준으로 회원 수는 363명임.

문 의 처
02)6788-5269

5) 붙임 참고자료 “전후납북피해자 현황” 등 참조

【참고자료】

< 전후납북피해자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어부	KAL기 ^{주)}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5	3,729	50	30	6	20
귀환자	송환자	3,310	3,263	39	-	-	8
	탈북귀환자	9	9	-	-	-	-
미귀환자 (억류자 제외)		516	457	11	30	6	12

주: 명부는 비공개("KAL기"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기 국내선 여객기가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공작원(조창희)에 의해 함경남도 선덕비행장에 강제착륙된 사건)

자료: 통일부

< 전후납북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대상 및 기준 >

구 분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정착금 등 (법 제8조)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 정착금: 월 최저임금액 200배 범위 내 - 주거지원금: 7,000만원 별도 ※최고액: 2.5억원(정착금+주거지원금)
피해위로금 (법 제9조)	3년 이상 납북된 자의 가족	월 최저임금의 36배 범위 내
보상금 (제10조)	납북자 및 가족 중 국가공권력 에 의한 사망·상이 피해자	- 사망자: 사망당시 임금 등을 감안하여 보상 - 상이자: 노동력 상실률, 장래 취업가 능기간 감안하여 보상
의료지원금 (제11조)	보상금 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 본인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자료: 통일부

< 전후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청건수	인정건수	지급액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피해위로금	444	432	13,374
보상금·의료지원금	14	3	261
계	467	444	15,408

자료: 통일부(2026. 2. 현재)

< 최근 5년간, 전후납북자단체에 대한 보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화합도모	55,100	51,040	49,700	50,340	45,850
단체홍보 및 권익증대	22,000	12,300	14,200	10,900	10,800
의료비 및 생계지원	73,000	80,000	80,000	80,000	83,000
경상비	34,900	41,660	41,100	43,760	45,350
합 계	185,000	185,000	185,000	185,000	185,000

자료: 통일부

< 최근 5년간, 전후납북자단체 회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의료비	7	2,700	14	4,200	11	4,100	11	3,600	8	1,900
생계지원 ^{주)}	1,004	79,900	693	69,300	1,074	88,345	723	57,820	709	58,380

주: 법령 및 정관에 근거없고, 매년 초 보조금 교부시 통일부가 통보하는 집행지침에만 근거

자료: 통일부

<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에 따른 의료비 등 집행 기준 >

구분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지급 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회 지급 (단, 50만원 이상 초과 할 수 없다) - (1인 1회만 지급) 암·치매 판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시(50만원) - (만75세 이상, 년 1회 지급) 병원 입원시(20만원, 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 (만75세 이하, 2년 1회 지급) · 10일 이상 입원시(30만원), 10일 미만 입원시(20만원) * 동일 병명 중복 지급 불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10만원씩 지급. 다만, 집행 잔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방법: 계좌이체(현금 지급 불가)

주: 「(사)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3항에 근거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수정